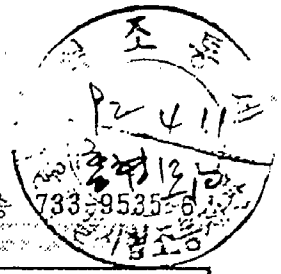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

전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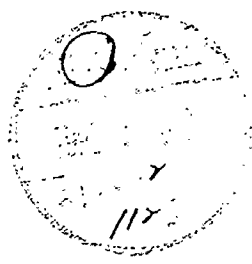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시설 30310- > //

시행일자 92. 4. 11

(경유) 제1안

수신 내부결격

참조



취급		시 장	
보존		결격	
도시계획국장	전 결	1992 4 09	[Handwritten signature and stamps]
시설계획과장	[Handwritten initials]	법무부장관	
가로계획계장	[Handwritten initials]	법무부총장	
기안	허찬욱(나석규)	법무부총장	
			협조

제목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변경결정

1. 하처 30350 - 283(92.3.27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건설부 고시 제358호(90.6.18)로 결정된 안양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하여  
 우리시 하수구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내용검토한 바, 구역  
 변경없이 단순한 권역변경 사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2의  
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생략  
 하고 별안과같이 변경결정 고시보자 합니다.

별첨 : 고시안 및 도면각1부. 등.

(재2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도시계획국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변경결정 보고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  
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1부 등.

서울특별시

(제3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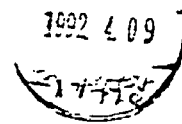
수신 총무처장관  
참조 법무담당관  
제목 관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합니다.

- 가. 게재구분 : 고시
- 나. 게재결정 :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변경결정
- 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제12조 및 같은법제8조
- 라. 게재내용 : 별첨 고시문

첨부 : 고시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(제4안)

수신 수신처참조  
제목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변경결정

1. 하천 30350 - 283(92.3.27)호와 관련임.

2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:안양천하수종말처리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동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토록하고 구청장은 도시계획법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1부. 끝.



수신처: 광서구청장(도시정비과장), 하수처리과장

서울특별시

과장	1992. 4. 13	13
담당	도시계획	법무담당관
18	13	12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 - 112 호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변경결정

1. 건설부 고시제358호(90.6.18)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 :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호,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서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2. 4. 13

서울특별시장

2.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정	안양천하수종말처리장	강서구 마곡동 74일대	1,059,575㎡	구역변경없이 면적조정
변경	"	"	1,065,031㎡	증 5,456㎡

\* 노면 : 건설부고시 제358호(90.6.18)와 같음.